▶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

1.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방법

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, 동료노인,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.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.

(1)시설의 역할

-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
-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
-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
-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
-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(노인보호전문기관)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

(2)시설종사자의 역할

-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(증거물 확보)
-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
-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
-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
-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
-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
-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

2.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

(1)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

-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, 의심되면 즉시 신고
  (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,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)

<신고 이후 시설의 조치내용>
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,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
-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 취하기
-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,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

(2)조사와 사정

-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진행
-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, 학대행위자,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
- 시설장,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, 현장조사에 협조
-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 구성

(3)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

- 시설장은 피해노인, 학대행위자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 계획,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고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
- 노인보호전문기관, 응급센터,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
-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, 해당 시·군·구에 행정조치 취하기

(4)평가와 사후조치

-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 정도, 개입 정도,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,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
-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, 시설종사자,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조사판정위원(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)을 참석 시켜야 함
-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재발여부 확인

3.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

(1) 신고의무

-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)
-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(노인복지법 제61조의 2)
-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

-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(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인일자리지원기관)

-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, 장애인복지시설,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, 사회복지관,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,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119구급대원,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

(2) 신고방법

-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(24시간 상담) 1577-1389 또는 129로 전화